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84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김승원·박지원·강훈식

임호선 • 박균택 • 장경태

이광희 • 서영교 • 이성유

박해철 • 박범계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 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을 제16조의7로 하고,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피고적격) ①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강제처분·피난명령·긴급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소방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적용례) 제1 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 안전활동 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강제처분·피난명령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행 <u><신 설></u>	제 성 안 제16조의6(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피고적격) ① 소방 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 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 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강제처분·피난명령·긴급조치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민사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소방공무원에게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소방공무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
<u>제16조의6</u> (소송지원) (생 략)	<u>제16조의7</u> (소송지원) (현행 제16 조의6과 같음)